

##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운송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(이하 "법"이라한다)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일체와 결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운임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요금에 의한 택시 승차 미터기의 요금 및 호출 이용료를 말한다.
2. 계약이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택시 승무를 인정하는 일체의 신문증을 소지한 운전기사와 여객 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.

**제3조(약관의 적용)**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 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(이하 "계약"이라한다)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.

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**제4조(여객의 동의)**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 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5조(약관의 변경)**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해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.

**제6조(준수사항)**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계약 및 운임

**제7조(계약)** ①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,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이 승차한때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.

②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,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,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**제8조(운임의 지불)** 여객은 목적지 도착 시 제2조 제1호 및 호출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환불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운송의 취소)**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때 에는 운송에 관한 공임만을 징수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여 객

**제10조(여객의 금지행위)**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음주,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
2.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
3.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
4.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

5.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
6.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
7.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, 이에 불응하는 행위

**제11조(운송의 거절)**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1.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
2.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3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4. 폭발성 물질, 부식성물질,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5. 시체 및 동물 (애완용의 작은 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 제외)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6. 분뇨,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
7.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

#### 제4장 운송책임

**제12조(운송의 책임)**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사발 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이다.

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,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,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④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등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신분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카드결제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차내에 게시하고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기고장,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13조(여객의 책임)**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,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여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운수종사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면책사항)** 천재지변,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면책사항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약관은 관할 시도지사 으로부터 승인된 2008. 5. 1.부터 시행한다.